

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『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』을 공포한다.

광 주 시 의 회 의 장

2019년 12월 19일

광주시의회 규칙 제4호

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 중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
제52조제3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전단 중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

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제10조제5항 중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8조(의사일정과 개회일시)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<u>간사와</u> 협의하여 정한다.</p>	<p>제38조(의사일정과 개회일시) -- ----- ----- <u>부위원장과</u> ----- --.</p>
<p>제52조(위원회 회의록) ①·② (생략)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<u>간사가</u> 서명한다.</p>	<p>제52조(위원회 회의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부위원장</u> <u>의</u> ---.</p>

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개정이유

-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는 등 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명칭을 변경함.

주요내용

- ‘간사’의 호칭을 ‘부위원장’으로 변경함 (안 제38조, 안 제52조제3항)